

#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결과 공개

# 경상북도개발공사 종합감사결과 공개

## I. 감사개요

- 대상기관 : 경상북도개발공사
- 감사기간 : 2018. 3. 5 ~ 3. 9(5일)
- 감사인원 : 회계감사담당 등 8명
- 감사범위 : 2015. 3월 이후 업무 전반

## II.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 행정상 : 20건 (주의 18, 시정 2)
- ▶ 재정상 : 1건 (감액 57,260천원)
- ▶ 신분상 : 9명 (경징계 3, 훈계 6)

### ○ 유연근무제 운영 소홀

- ❑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형) 승인 받은 직원은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초과근무 확인시스템 등에 출퇴근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함
- ❑ 유연근무제 신청자에 대한 근태관리시스템 확인 결과 특별한 사유없이 누락된 경우 확인

#### 조치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 ○ 물품관리 소홀

- ❑ 물품을 불용처리할 경우에는 다른 물품관리자에게 소요여부를 조회한 후 소요부서가 없는 물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고, 불용의 결정에는 처분방법(매각, 양여, 해체, 폐기 등)을 명시하여야 함

- ▶ 2015년과 2017년 PC 101대, 모니터 53대, 프린터 24대, 노트북 9대, 스캐너 7대 등을 불용절차 없이 물품 처분

**조치**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 ○ 금고검사 미실시

- ▶ 금고계약을 체결한 지정금융기관을 연1회 이상 보유현금 및 유가증권, 전도자금 등의 출납 및 보관·운용의 적정성, 수납 및 지출의 적정성 등을 검사하여야 하나, 금고검사 미실시

**조치**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 ○ 업무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부적정

- ▶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의 소유자는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 ▶ 실내공기질의 정기적 측정 및 관리책임자의 교육 미이수

**조치** ▶ 관련 환경부령에 따라 측정조치·기록보존 및 교육 시정조치

### ○ 정보공개 민원 지연처리 부적정

- ▶ 공공기관에서는 정보공개에의 청구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리기한 보다 14일이나 경과하여 정보공개결정 통보함

**조치**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 관련자 신분상 훈계 조치

## ○ 폭력 예방교육 불참자에 대한 조치 소홀

- ▶ 공공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 ▶ 인사규정에 교육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미이수자에 대한 인사고과 반영 없이 4대 폭력예방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후속 조치 소홀

### 조치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 ○ 사옥 임대료 산정 및 임대계약 부적정

- ▶ 사옥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대공고를 원칙으로 하며, 임대료의 결정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 산출평균치 또는 시중임대시세를 비교한 금액으로 결정 한다고 규정
- ▶ 2001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공고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계약연장시 2개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출평균치 또는 시중 임대시세를 반영하여야 하나, 1개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으로 임차함

### 조치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 ○ 항공마일리지 관리 부적정

- ▶ 국외여행의 경우 가급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하며, 적립된 마일리지는 사적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규정
- ▶ 항공마일리지 활용방안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적립된 마일리지를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함에도 국외여행자 59명(99건)의 해외연수 등 목적으로 출장 다녀왔으나,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 않음

### 조치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 ○ 직원숙소 임차 업무 미흡

- ▶ 사업단에 근무하는 직원의 숙소 편의를 위하여 합숙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숙소는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규모의 아파트, 다세대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 ▶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숙소의 제경비(월임차료, 관리비) 등을 납부하여 예산 낭비 초래

### 조치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에서 경조사와 관련된 경비는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의한 기준에 맞게 집행하되 기관으로서 공적인 사항에 대하여만 집행하도록 규정
- ▶ 축의·부의금품은 대표 1인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이사 명의로 중복 집행(19건, 950천원)

### 조치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부적정 집행(27백만원)

### 조치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 ◇◇ ◇◇◇◇ ◇◇◇◇◇ **진출입로 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 ▣ 발주기관은 공사수행에 필요한 용지를 착공전 확보하여 수급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나 미확보 및 이로 인한 시공중지로 간접비 지급 우려

<b>조치</b>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 관련자 신분상 훈계 조치
-----------	---

○ ★★★★★★★★ **전면책임감리용역 추진 부적정**

-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 및 공종 등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현장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 ▣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동절기, 시공중지 기간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조정·배치하여 적정조치를 했어야 했음에도 당초 계획대로 배치

<b>조치</b>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 관련자 신분상 경징계, 훈계 조치
-----------	--

○ ■■ ■■■ ■■■■ **조성공사 외 1개 사업 추진 부적정**

-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하도록 규정
- ▣ 옹벽 설치를 위한 거푸집은 시공 효율성이 우수하고 경제적인 유로폼이 적정함에도 고가의 합판거푸집(4회) 적용 등 (57,260천원 과다계당)

<b>조치</b>	▸ 57,260천원 감액 시정조치
-----------	--------------------

○ ☆☆☆☆☆☆☆ ☆☆☆ **추가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등**

- ▣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본단지 시공업자에게 전시공 시키고 이후 조경공사는 하자 책임 불분명을 사유로 수의계약이 불가함에도 수의계약 체결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며 구매 금액이 1억원이상으로 2단계 경쟁입찰로 구매하여야 할 점토바닥벽돌을 특정업체 제품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관급자재 단가보다 고가인 사급자재로 설계 반영

<b>조치</b>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 관련자 신분상 경징계
-----------	---

○ ♠♠♠♠♠♠♠♠♠♠ 및 ☆☆☆☆☆ **본단지 기반시설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 ▣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른 공사정지기간(489일)에 대한 금융비용 및 공사간접비 및 물가상승률 추가 반영 우려

<b>조치</b>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 관련자 신분상 훈계
-----------	--

○ ●●●●●●●●●●●●●●●● **시설보완 공사 추진 부적정**

- ▣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를 분리발주하여 해당면허를 보유한 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면허가 없는 본단지 시공업자와 수의계약 부당 체결

<b>조치</b>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	------------------------------

## ○ 선금 정산 미실시

- ▣ 선금을 지급하고 회계연도가 종료되어 이월된 사업의 미 집행된 선금을 반환받아 이월금액을 확정하여야 하는데도, 선금 집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잔여공사비만 이월하는 것으로 이월금액 확정

### 조치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 ○ 건축설계 제안공모 심사 부적정

-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모안을 검토한 결과 외부 전문가의 성명과 경력, 당선 이후 과업을 수행할 공동계약 구성원들의 상호, 소속 직원의 성명을 기재하여 현저히 익명성 유지 원칙에 위배되며 해당 업체를 특정할 수 있어 실격사유에 해당됨에도
- ▣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 감점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고 의결을 받아 심사대상으로 평가

### 조치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 관련자 신분상 경징계

## ○ ◆◆◆◆◆◆◆◆ 한옥시범주택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 ▣ 한옥시범주택 건립공사(도급액 741,415천원) 입찰공고 시 현장설명서에서 현장대리인 자격조건을 “건설 경험과 기술력이 풍부하고 연면적 100㎡ 이상의 한옥건축물 시공 경험이 있는 기술자를 선정배치하여야 한다”고 과도하게 제한

### 조치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 경상북도체육회 종합감사결과 공개

## I. 감사개요

- 대상기관 : 경상북도체육회
- 감사기간 : 2018. 3. 27 ~ 3. 30(4일)
- 감사인원 : 회계감사담당 등 4명
- 감사범위 : 2014. 10월 이후 업무 전반

## II.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 행정상 : 11건 (시정1, 주의 8, 권고 2)
- ▶ 신분상 : 4명 (경징계2, 경고 3)

### ○ 체육회 통합시 직제·정원 임의 조정

- ▣ 2016년 경북체육회가 통합하면서 이사회 의결없이 직제·정원 임의조정  
- 타시도 체육회 평균 4급 비율 13%, 경북 30% 타시도 비해 과도한 직급 상황

#### 조치

- ▶ 유사기관과의 균형성, 통솔범위 등을 직제·정원 등을 재획정하도록 권고
- ▶ 관련자 신분상 경징계 조치

### ○ 통합사무처 직원 직급조정(7~9급) 부적정

- ▣ 2016년 경북체육회가 통합하면서 이사회 의결없이 직제·정원 임의조정  
- 최소근무연수와 관계없이 9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결과 초래

#### 조치

- ▶ 유사기관과의 균형성, 통솔범위 등을 직제·정원 등을 재획정하도록 권고

### ○ 학교체육 육성지원비(운동부 코치) 지급 부적정

- ▣ ◆◆◆◆고등학교가 지정한 소속학교 육성종목 운동부 코치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중학교 소속 운동부 코치 54,600천원지급

**조치**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촉구

○ **직책급 업무추진비 지급 부적정**

▣ 4급 직원 7명(부장 2, 팀장 5)에게 직책급 업무추진비 지급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 위반

**조치**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은 조달청의 2인 이상 수의계약 해야 하나 분할발주로 1인 수의견적에 의한 계약 체결함

**조치**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 관련자 신분상 경고 조치

○ **무기계약직 근로자 채용 부적정**

▣ 일시적 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무기계약직 1명을 채용하였으나, 현안업무 해소 후에도 계속채용

**조치**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 **공사 감독조서 미작성**

▣ 공사 준공 시 공사 설계서와 도면, 계약서 조건의 내용대로 준공되었는지 감독자가 확인하고 서명한 감독조서 작성 미이행

**조치**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 수입지출외 현금 관리 소홀

- ▣ 수입지출외 현금 계좌에 현금 33,788천원 있으나, 발생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어 반환이나 수입조치 못하고 장기간 보관하고 있음

**조치** ▸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반환하도록 시정 조치

○ 업무추진비 등 집행 부적정

- ▣ 업무추진비는 업무협의 간담회 등 목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나, 고속도로휴게소 및 마트에서 집행하는 등 목적 외 사용함(38건, 3,300천원)

**조치**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 학교체육 육성지원비(대학운동부 지원) 지급 부적정

- ▣ 대학운동부지원에 연간 최대 15,000천원 지원할 수 있으나, ◆◆대학교 여자축구부에 규정금액 이상 28,000천원에서 200,000천원 4회 지원

**조치**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촉구

○ 직인관리 소홀

- ▣ 통합체육회는 생활체육회 직인을 기관의 폐지로 직인을 폐기하여야 함에도 폐기하지 않고 있음

**조치**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종합감사결과 공개

## I. 감사개요

- 대상기관 :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 감사기간 : 2018. 4. 10 ~ 4. 13(4일)
- 감사인원 : 회계감사담당 등 4명
- 감사범위 : 2014. 10월 이후 업무 전반

## II.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 행정상 : 6건 (시정2, 주의 4)
- ▶ 신분상 : 4명 (훈계4)

### ○ 이사회(의결기구) 운영 부실

- ▣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결의로서 이사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서면결의시 차기 이사회에 결과 보고 및 승인 미이행

#### 조치

-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 ▶ 관련자 신분상 훈계 조치

### ○ 장애인 생활체육위원회 운영 부실

- ▣ 처리안건에 대한 회의록 미작성 및 위원들이 심의를 위해 작성해야 할 평가 배점표 부실 작성

#### 조치

-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 ▶ 관련자 신분상 훈계 조치

### ○ 예산운용 등 부적정

- ▣ 고용장려금 예산을 집행 한 후 잔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월사유 등을 명시한 이월요구서 작성하여 명시이월조서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고용장려금 세입예산 명세서에 고용장려금 잔액으로만 기재함

**조치**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 ○ 장애인행복 건강걷기대회 예산집행 부적정

❑ 집행 목간 금액을 전용하면서 사전 품의를 받지 아니하고 세입세출결산서에도 명시하지 아니함

**조치**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 ○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미사용

❑ 차량용 유류를 구입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카드로 사용 예산낭비

**조치** ▶ 앞으로 차량용 유류카드를 활용하도록 시정 촉구

### ○ 물품관리 현황 조사 미실시

❑ 2년마다 정기적으로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4년 이후 미실시

**조치** ▶ 앞으로 정기적 재물조사 실시하도록 시정 촉구

# 경북테크노파크 종합감사결과 공개

## I. 감사개요

- 대상기관 : 경북테크노파크
- 감사기간 : 2018. 5. 14 ~ 5. 18(5일)
- 감사인원 : 회계감사담당 등 7명
- 감사범위 : 2015. 2월 이후 업무 전반

## II.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 행정상 : 14건 (주의 9, 시정 5)
- ▶ 재정상 : 2건 (회수 5,686, 감액 80,174천원)
- ▶ 신분상 : 5명 (징계 1, 훈계 4)

### ○ 경북테크노파크 통합에 따른 후속조치 부적정

- ▣ 해산법인의 재산 전수조사를 실질적으로 한 후 통합 경북테크노파크로 재산을 인계 하는 과정이 필요하였으나, 통합전 사용하여 오던 계좌는 이관되어오는 기관에서 관리하다 개별적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등 이관작업 미흡

**조치**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 ○ 유연근무제 운영 미흡

- ▣ 유연근무제 승인 받은 직원은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문인식을 필수로 하여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으나, 출퇴근 체크 누락 발생

**조치**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 ○ 직인관리 소홀

- ▣ 해산된 법인의 공인을 각각 위의 방법에 따라 당연히 폐기하여야 함에도 폐기하지 않고 있어, 공인관리를 소홀히 함

**조치** ▸ 공인을 폐기하도록 시정 조치

## ○ 정보공개 민원 지연처리 부적정

- ▣ 민원인이 정보공개포탈에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처리기한 연기 결정도 없이 20일이나 처리기한이 지연된 정보공개결정을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등 4건의 정보공개신청 민원을 처리하면서 1일에서 20일까지 정보공개민원을 지연하여 처리

**조치**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 관련자 신분상 훈계 조치

## ○ 입주기업 연장 승인 부적정

- ▣ 입주제한에 대한 사전검토도 없이 평가위원 3인에게 전적으로 입주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묻는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 있었으며, 사전 검토되었어야 할 승인제외 대상 사업장이 입주 연장됨

**조치**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 ○ 연구수당 과다 지급

- ▣ 1차연도와 2차연도 연구수당을 지급할때에는 실제 집행된 인건비를 기준으로 정당한 요율(10%)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연구수당을 편성된 예산액을 기준으로 과다 지급

**조치**

- 과다지급한 5,686천원 회수 시정조치
- 관련자 신분상 징계, 훈계 조치

**○ 공무항공마일리지 관리 부적정**

- ▣ 공무국의 출장을 이용한 직원에 대하여 귀국 후 14일 이내 항공마일리지를 신고받고 개인별 항공마일리지를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21건에 대하여 항공마일리지 신고서가 제출하지 않았거나 항공마일리지를 적립하지 않아 항공마일리지 기록카드에 실적 기재 누락

**조치**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 세입세출외현금 및 공공예금출납계좌 관리 부적정**

- ▣ 15건 계좌에 대하여 사업이 종료되어 계좌를 보유할 필요가 없는데도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있으며, 기관의 통합으로 변경된 기관 명의를 계좌를 새롭게 개설 후 자금을 이체하고도 기존 계좌를 즉시 해지하지 않고 방치

**조치**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계좌를 해지하는 등 시정 촉구

**○ 세미나실 사용비 정산 부적정**

- ▣ 2015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 등 3개 업체 교육 및 세미나 대관료 등을 20회 510,400(부가세 포함)을 과소 부과

**조치**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 비품 관리 부적정**

- ▣ 법인이 재정으로 구입되는 비품과 법인에 기증된 비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관리자는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비품관리에 유의하여 수시로 대장과 현품을 대조하여 점검하여야 하나, 모든 비품에 대한 내용연수를 5년으로 간주처리하고, 반기별 현장실시 미실시

**조치**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 ○ ♣♣♣♣♣ 생산공장 리모델링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

- ❑ 건축물 석면해체·제거는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석면을 해체·제거하여야 함에도, 이행 자격이 없는 시공사에게 석면(85㎡)을 해체·제거하도록 설계변경 시 도급내역에 반영하여 관련 규정 미준수

**조치**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 ○ ♥♥♥♥♥♥♥♥♥♥♥ 센터 건립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

- ❑ 건축공사 내역서에 사토처리에 대한 비용이 반영되어 있음에도, 토목공사 내역서에 이중으로 반영하여 운반비 중복계상
- ❑ 하수관거 내부 CCTV 조사 및 수밀시험은 도급내역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발주하여야 함에도, 도급내역에 반영하는 등 과다계상

**조치** ▶ 80,174천원 감액 시정 조치  
▶ 관련자 신분상 훈계 조치

### ○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미등재

- ❑ 생산공장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정밀안전진단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에 10일이내 등재하여야 하나 등재 없음

**조치** ▶ 등재하도록 시정 조치

○ **생산공장 시설공사 하자검사 업무 소홀**

- ▣ “**\*\*\*\*\* 건축공사**”에 대하여 계약담당자는 시설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하자검사 및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나 실시하지 않음

**조치**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종합감사결과 공개

## I. 감사개요

- 대상기관 :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 감사기간 : 2018. 6. 26 ~ 6. 29(4일)
- 감사인원 : 회계감사담당 등 4명
- 감사범위 : 2014. 8월 이후 업무 전반

## II.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 행정상 : 6건 (주의 1, 시정 5)
- ▶ 재정상 : 1건 (회수 5,000천원)
- ▶ 신분상 : 2명 (경징계 1, 훈계 1)

### ○ 법인이사회 미구성

- ▣ 임기가 종료된(2016. 1. 1. ~ 2017. 12. 31. 임기 2년) 위촉직 이사에 대하여는 위촉 절차를 밟아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여야 할 것이나, 현재까지 새롭게 선임하고 있지 않음

**조치** ▶ 조속한 새로운 이사 선임 시정 촉구

### ○ 인사위원회 규정 미흡

- ▣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별도 인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인사위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필요

**조치** ▶ 유사한 사례를 참조하여 인사위원회 규칙 개정하도록 시정 촉구

## ○ 행복마을 사업추진 부적정

- ▣ 연도말에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자 2건 공사에 대하여 2017.12.27.~12.29.까지 공사기간이 3일에 불과하여 공사가 기간 내 완료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연도내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추진
- ▣ 공사완료에 대한 준공검사 실태결과 미준공한 1건에 대하여는 회수처리

### 조치

- 5,000천원 회수 시정조치
- 관련자 신분상 경징계, 훈계 조치

## ○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 ▣ 후원금 등의 수익금 예산은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는 직접 사용할수 없는데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사업비로 직접 사용하는 등 후원금 관리 및 집행에 부적정

### 조치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 ○ 근로복지비 지원 절차 부적정

- ▣ 근로복지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신청사 이전일로부터 3년간 매월 30만원씩 지급한다는 “근로복지비 지원 계획(안)”을 센터장 결재를 받은 후 이사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 승인받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급함

### 조치

- 이사회 안건으로 제출 승인 받도록 시정 촉구

## ○ 법인 정관 등 제규정 정비 소홀

- ▣ 정관의 내용의 일부가 각 조항 간에 서로 맞지 아니하고, 자체

제 규정이 실제 기관운영 상황과 맞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개정  
하지 않고 운영함

**조치**

▸ 현실에 맞도록 제규정을 개정하여 운용하도록 시정 촉구

# 경북장학회 종합감사결과 공개

## I. 감사개요

- 대상기관 : 경북장학회
- 감사기간 : 2018. 7. 10 ~ 7. 13(4일)
- 감사인원 : 회계감사담당 등 4명
- 감사범위 : 2015. 7월 이후 업무 전반

## II.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 행정상 : 5건 (주의 3, 시정 2)
- ▶ 신분상 : 2명 (훈계 2)

### ○ 2017년 정기 근무평정 미실시

- ▣ 개인별로 업무 정량지표 및 정성지표를 설정하여 평정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고 평정서에 따라 평정자가 점수를 부여하여 2017년 정기평정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미실시

#### 조치

▶ 관련규정에 따라 정기평정을 하도록 시정 촉구

### ○ 인사관리카드 관리 부실

- ▣ 징계, 휴직, 국내외 훈련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하고,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에 올라 있는 징계처분의 기록을 삭제하여야 함에도 미등재

#### 조치

▶ 관련규정에 따라 인사관리카드 정비하도록 시정 촉구

## ○ 생활관 가구 구입사업 계약 부적정

- ▣ 1억원이상 물품을 구매할때 다수공급자 계약방식을 통해 계약 하여야 함에도, 침대 및 매트리스 교체 등 2건 사업에 대하여 조달쇼핑몰에 등록된 제3자단가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1인 계약자를 선정하여 계약 체결하였음
- ▣ 다수공급자 계약방식으로 했을 경우와 비교하면 25,704천원 예산 낭비

### 조치

-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 관련자 신분상 훈계 조치

## ○ 생활관 욕실 리모델링 사업 예산편성 부적정

- ▣ 입찰잔액 반납예산을 줄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교부되지도 않았는데도 허위로 추가 교부받는 것으로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입찰을 집행하는 사업 추진

### 조치

-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 ○ 건축물 보수 공사 업무 부적정

- ▣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는데도 선지급

### 조치

-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 종합감사결과 공개

## I. 감사개요

- 대상기관 :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
- 감사기간 : 2018. 8. 28 ~ 8. 31(4일)
- 감사인원 : 회계감사담당 등 4명
- 감사범위 : 2015. 4월 이후 업무 전반

## II.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행정상 : 6건 (주의 4, 시정 2)

### ○ 유연근무제 운영 미흡

- ▣ 유연근무제 승인을 받은 직원은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근태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나, '17. 7. 3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유연근무제 신청자의 출·퇴근 내역을 확인한 결과 형식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여 신청자의 출·퇴근 시간을 알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음

#### 조치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 ○ 경상북도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및 조직관리 부실

- ▣ 원장은 사무처, 경상북도북부청소년문화센터를 지도·감독하고, 조직인사예산 등 법인 업무의 총괄 기획·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자는 이동형 운전기사인 ☞☞☞ 1명이고, 나머지 10명은 기간제 근무자로 2년 미만 근무자이며, 현재 센터장은 공석중에 있음.

- ▣ 이로 인하여 업무(회계처리 등)의 연속성과 전문성 미흡

**조치**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의 운영에 적절한 조치 취하도록 주의 촉구

###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 집행 부적정

- ▣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연간집행 계획 수립도 하지 않은 채 설명절 직원 격려품을 구입하는 등 부적절하게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 ▣ 축의·부의금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부서 운영업무추진비로 부당집행(11회 550천원)

**조치** ▸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 ○ 수익금 사업계획 승인 등 미이행

- ▣ 수익사업을 하려는 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여야 하며 정관에 수익사업의 근거조항 및 구체적인 사업종목의 등재가 없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수익사업을 신설하여야 함에도 2018년 사용료 관련 기준이 부재하여 내부결재만으로 강의료 및 이용료 징수

**조치** ▸ 관련규정을 정비하도록 시정 촉구

### ○ 1년미만 기간제 근로자 퇴직적립금 처리 부적정

- ▣ 보조금으로 집행한 퇴직적립금 가운데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은 지급할 사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보조금 교부기관에 반납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 ▣ ☹☹☹ 등 10명의 퇴직적립금 4,622천원 지급사유가 사라졌음

에도 정산·반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음

**조치**

▸ 반납하는 등 적절한 조치하도록 시정 촉구

## ○ 공사 및 용역 분리 발주

- ▣ 2016년 경상북도 청소년 박람회 부스 설치 등 3건을 시행하면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고, 1인 견적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 체결(3건, 45,160천원)

**조치**

▸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